

『성적평가 세부지침』

최근개정 2024.02.26.

□ 관련규정: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1. 평가시기(규정 제2조)

- 가. 수시평가: 1, 2학기에는 통상 수업 8주차에 실시함(실시 여부는 과목별 자율).
→ 수시평가로 인한 수업결강 불가. 여름, 겨울학기에는 별도 기간을 두지 않음.
- 나. 기말평가: 각 학기별로 마지막 주차에 실시
- 다. 기타평가: 학기 중 수시(자율)

2. 관련서류 보존 및 제출의 의무(규정 제21조)

가. 종류

- ① 강의계획서
- ② 성적평가관련 서류(성적평가 방법 포함: 붙임 참조)
 - 1. 성적평가 채점(성적배점)기준표(모범 답안지가 있는 경우 생략)
 - 2. 수시/정기평가 시험 문제지
 - 3. 수시/정기평가 모범답안지
 - 4. 수시/정기평가 학생제출 답안지(채점점수 기입된 자료)
 - 5. 과제물 평가 기준표
 - 6. 과제물, 태도, 실험실습평가 채점표(학생개인별 또는 전체 채점표)
 - 7. 출석부

나. 서류의 보관: 전임교원은 담당교수가 직접 보관하며, 전임교원이외 교원은 학과장의 책임 하에 학과에서 10년간 보관.

다. 제출의 의무: 교무처에서 성적관련 서류 제출 요구시 즉시 제출

3. 성적공고, 이의신청 및 정정(규정 제19조)

가. 성적공고 방법: 대학정보시스템에서 개인별 조회함.

가. 성적공고 및 정정기간: 성적입력 완료 후 1주일(여름, 겨울학기는 3일)간.

다. 성적정정 진행 내용

- 1) 성적정정 사유: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으나, 규정 제19조제6항¹⁾에 해당 될 경우 정정할 수 있다.
- 2) 정정요청에 대한 답변의 의무: 학생이 성적정정 요청을 할 경우 담당교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 3) 절차: ①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신청 또는 대학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학생) → ②정정 요청사항 검토(교수) → ③정정신청(대학정보시스템)(교수) → ④전자결재(학과장-학장-교무처) 승인 → ⑤정정완료

※ 성적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4항²⁾에 의하여 반드시 증빙자료³⁾를 첨부

1) 규정 제19조(성적의 이의신청 및 정정) ⑥성적정정기간 외에는 성적이의신청 및 성적정정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등록의 기재착오, 입력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규정 제19조(성적의 이의신청 및 정정) ④제3항에 따라 성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로 성적정정 신청을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정 제13조(성적평가 방법)에 명기한 항목 기준, 시험지, 모범답안지, 채점(성적배점)기준표, 학생 제출 답안지, 과제물 채점표, 과제물 배점 기준표, 출석부, 사유서

하여야 한다.

4. 성적평가 방법(규정 제13조)

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출석 20%는 필수**로 적용하며, 그 외 80%는 항목별 자율조정이 가능하다.<예시 1> 참조)

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취득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 F로 처리한다.(필수사항)**

라. Endicott자율융합학부의 복수학위과정을 위한 프로그램(GHDDP)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

<예시 1> 평가항목에 따른 비율 적용 사례

구분(평가항목)	순수이론과목	이론과 실습병행과목	순수실험 실습과목	비고
출 석	20%	20%	20%	필수적용 80%내에서 항목별 비율조정 가능
정 기 평 가	40%	40%	-	
수 시 평 가	20%	20%	-	
과 제 및 태 도	20%	-	-	
실 험 실 습 성 과	-	20%	60%	
실 험 실 습 태 도	-	-	20%	
합 계	100%	100%	100%	

※ 단, 80%내에서 항목별 비율조정 변경 시 강의계획서에 기입한 평가비율도 변경하여야 함.

마. 규정 제13조제4항4)에 따른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

1) 상대평가 비율의 일반적 기준

학점구분	평점	상대평가 비율
$A^0 \sim A^+$	4.0~4.5	30% 이하
$B^0 \sim B^+$	3.0~3.5	40% 이하
$C^0 \sim C^+$	2.0~2.5	30% 이상
$D^0 \sim D^+$	1.0~1.5	
F	-	별도

2) 성적평가의 유연성을 고려한 등급별 세부 기준

번호	과목구분	평가등급	비율	비 고
1	• 3학년 이하 개설 교과목 • 교양(전체학년 대상) 교과 목	A+~A0	30%	• 일반강좌 기준(이론, 실습, 병행 모두 포함)
		B+~B0	40%	
		C+~D0	30%	
	• 4학년 개설 교과목 • 외부실습(현장실습, 임상실 습 등) 교과목	A+~A0	50%	• 일반강좌 기준(이론, 실습, 병행 모두 포함)
B+~D0	50%			

4) **규정 제13조(성적평가 방법) ④**학칙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 평가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등급별 비율은 별도 지침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번호	과목구분	평가등급	비율	비 고
2	· 10명 미만 과목	A+~A0	50%	·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절대평가로 변경 가능
		B+~D0	50%	
3	· 특별 교육과정 · ROTC 군사학	A+~A0	40%	
		B+~D0	60%	
4	· Honors(외국어)	A+~A0	50%	· Honors(영어) 교과목은 성적평가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
		B+~D0	50%	
5	· 교직과목 · 전공 필수 자격증 과목	A+~A0	30%	· 교직: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명시된 과목 및 학과개설 교직이론 과목(단, 표시 과목별 기본이수영역 전공 교과목은 제외함) · 자격증: 자격증 발급기관의 자격증 발급요건을 명시한 근거문서 등 첨부
		B+~D0	70%	
6	· 수준별 수업 과목 (합반성적처리)	A+~A0	30%	· 각각의 분반을 하나의 반으로 합반 성적 처리하며, 합반성적 처리시 <u>개설학년 기준 성적평가 비율을 유지해야 함.</u> · 강좌별 등급 비율은 수강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성적평가 비율을 고려해야 함.
		B+~B0	40%	
		C+~D0	30%	

<공통사항>

1. 별도 비율을 적용하는 과목(3번~5번)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 2학기에는 2주 이내, 여름, 겨울학기에는 1주 이내에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2. 평가등급 우선 적용 순위: 6번을 제외한 1~5번 적용사항은 A성적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함

5. 절대평가 시 등급별 기준 점수(규정 제13조의3)

등급	기준 점수
A+	95점 이상
A0	90점 이상 ~ 95점 미만
B+	85점 이상 ~ 90점 미만
B0	80점 이상 ~ 85점 미만
C+	75점 이상 ~ 80점 미만
C0	70점 이상 ~ 75점 미만
D+	65점 이상 ~ 70점 미만
D0	60점 이상 ~ 65점 미만
F	60점 미만

6.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한시적 상대평가 적용(규정 제13조의2)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과목구분	평가등급	비율	비 고
· 상대평가 개설 과목 전체	A+~A0	50%	·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에 적용 · P/NP 개설 과목 제외
	B+~D0	50%	

2024.02.26.

우송대학교 교무처